

#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사업 신규품목 보조지원 신청 개시

## □ 낙하물방지망(방호선반)

- (지원대상) 산재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임차·설치 사업주 [전문건설업체\*(하도급) 포함]

\* 「철근·콘크리트 공사업」 및 「비계·구조물 해체공사업」의 건설업 등록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며, 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한하여 지원 가능

※ 지원 제외대상: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(토목·건축공사업)순위 상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,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, 부정수급 등 참여제한 사업장, 산재보험 미가입(체납) 사업주 등

- (지원품목) 낙하물방지망\*(방호선반)

\* 기존 낙하물방지망 1종(플라잉넷) → 2종(플라잉넷, 방호선반) 지원 확대

- (지급기준)

설비 코드	대상 품목명	대상 설비명	보조금 지급기준
12-05-197	건설업 추락방지 안전시설	안전방망 (낙하물 방지망)	1. 낙하물방지망(플라잉넷 방호선반)은 시스템비계 보조 지급 현장에 한하여 지급 2. 낙하물방지망(플라잉넷, 방호선반) -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 - (플라잉넷) 사다리: 폭 30cm내외 x 길이 2m이상 3. 표준가격테이블에 따라 가격결정

- (가격기준) 「표준가격테이블」에 따라 가격결정

☞ 낙하물방지망(방호선반) 표준단가(부가세 별도)

종류	단위	재료비 (원)	노무비 (원)	단가 (원)	사용장소
낙하물방지망 (방호선반)	m <sup>2</sup>	12,000	8,000	20,000	근린생활시설,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등 건축물 외부

\* 전문건설업체(하도급) 보조 시 재료비 단가 × 설치면적 × 보조비율 적용

☞ 공사금액별 지원비율

구분	20억원 미만	20억원 이상
지원비율	65%	50%

- (지원한도) 건설현장 당 최대 3천만원 한도, 공단 판단금액의 최대 50~65% 지원

\* 당해연도 건설업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한도에서 차감

-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사업계획 추진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